

예방의학 전공의 수련교육과정 개정안

1997. 4. 25. 예방의학회
수련교육위원회 위원장
서울의대 안 윤 옥

서론

현재의 예방의학 전공의 수련교육과정은 1992년에 발간된 '예방의학과 레지던트 학습목표'에 수록되어 있다. 책자의 일러두기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 주요 내용은 1989년 학회 워크샵에서 보고되었던 '전공의 학습목표'를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1994년 산업의학이 독립된 전문과목으로 분리되고자 하는 노력이 가시화 되면서 예방의학 전공의의 수련교육과정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었고, 그 결과 1994년 가을학회에서는 학회차원에서의 공식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학회 혹은 전공의 하계수련등이 있을 때마다 수련교육과정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며 1996년 가을학회에서는 수련교육위원장에 의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의 개선방향이 제안되어 논의된 바 있다. 당시의 논의결과 제안된 방향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학습목표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는데 동의하였으며 아울러 세부전공수련(Fellowship program)에 대한 방향설정 작업도 시작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하였다.

학습목표 개정방향의 주요한 기본골격은 현재의 분야구분체계인 ①역학 및 생정통계, ②환경 및 산업보건, 그리고 ③보건관리를 파기하고 대신 병인론(病因論)을 중심으로 하는 ①학문수련(Academicum)과 질병예방 및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②예방의술(豫防醫術) 수련(Practicum)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예방의술수련 과정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하면서 보다 전문적(Professional)이며 특이성(Specific)이 있는 내용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골격을 바탕으로 예방의학 전공의 수련교과내용을 재편하였으며, 수련교육에 부수적으로 관련되는 제 규정을 검토하고 그 개정안을 제시한다.

1. 교육목표

현행 예방의학 전공의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1990) :

[예방의학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은 개체 및 인구집단(지역사회 또는 특수사회-기능집단)의 질병예방과 보건관리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사항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1) 예방의학의 병인론적 및 총괄적인 보건의료 기본지식
- 2) 보건의료사업의 관리능력(기획, 수행, 평가)
- 3) 보건의료 책임자로서의 역할수행 능력]

개정안

[인간의 질병발생 또는 건강손상에 관련하는 병인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병인을 탐구하는 연구방법과 그 원칙을 이해하여 연구능력을 갖추며, 개체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질병의 예방 및 건강보호를 위한 전문적이며 특이적인 예방의술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안의 내용설명

학문수련으로서는 병인학적 지식습득과 병인을 탐구하는 연구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수련하는 의술의 범위에서 치료의술을 배제함으로서 예방의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다. 특정질병의 발병예방과 조기진단에 관한 의술, 그리고 건강보호 내지는 증진을 목표로 하는 보건관리기술로서 전문적이며 특이적인 수준의 내용이 된다. 이러한 예방의술은 집단을 대상으로 함은 물론 개인에게도 적용,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서 전문적이라 함은 상식적이고 보편화 된 내용을 벗어나 전공의 수련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내용임을 강조하는 것이며, 특이적이라 함은 개체의 특성 또는 집단의 특성에 따라 제공하는 내용이 차별됨을 표현한다.

현재의 교육목표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의료사업관리 능력’과 ‘보건의료책임자의 역할수행 능력’은 자칫 보건의료정책이나 행정분야에 국한된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또한 ‘보건의료’라는 용어가 치료와 재활까지도 포함하는 너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예방의학의 정체성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2. 학문수련의 학습내용

제 1 장 인과성에 관한 과학철학적 이해 및 지식

- ① 인과관계의 개념과 정의
- ② 관련성과 인과성
- ③ 질병발생의 인과성 개념과 추론과정

제 2 장 우리 나라 국민의 건강-질병양상과 변천

- ① 우리 나라의 건강-질병 양상과 변천
- ② 생정 및 상병통계지표
- ③ 각종 보건의료 관련 통계지표(국내 및 국외)

제 3 장 질병진단학 및 건강진단학

- ① 특정질병(국민보건에서의 비중이 높은)에 대한 진단학
- ② 특정질병 조기진단방법론 및 조기진단의 효과
- ③ 건강진단 방법론

제 4 장 건강-질병현상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연구방법론

- ① 역학적 방법론
- ② 실험적 방법론(임상시험, 동물시험)
- ③ 의학통계 및 확률론

제 5 장 병인학적 지식

- ① 특정질병별 병인학적 지식(고위험군, 유전자적 감수성)
- ② 생물학적 요인의 병인학적 지식
- ③ 물리화학적 요인의 병인학적 지식(생활환경 및 직업환경)
- ④ 행동적 요인의 병인학적 지식(생활습관 등)
- ⑤ 사회-문화-제도적 요인의 병인학적 지식

제 6 장 위험요인조절을 통한 질병예방 방법론

- ① 특정질병별 발병위험도 평가방법론
- ② 특정질병별 요인조절 방법론
- ③ 예방효과 평가방법론
- ④ 특수집단에 대한 접근방법론

제 7 장 사회적 제도조정을 통한 건강증진 방법론

- ① 건강증진사업의 목표설정 방법론
- ② 건강증진사업의 기획방법론
- ③ 건강증진사업의 사후평가 방법론
- ④ 특수집단에 대한 접근방법론

3. 의술수련의 학습내용

제 8 장. 특정의 인구집단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건강진단 수기

- ① 건강-상병조사(Health survey) 및 건강평가
- ② 유행병 역학조사
- ③ 집단검진(Health screening)
- ④ 기준상황조사(Baseline survey)

- ⑤ 조사자료의 통계적 처리 및 분석
- ⑥ 특정질병의 발병위험요인 및 위험도 평가
- ⑦ 특정질병 예방사업의 기획, 수행, 및 평가

제 9 장. 집단대상의 건강증진사업 시기

- ① 건강증진 목표 설정
- ② 사업의 기획, 수행, 및 사후평가
- ③ 특수집단에 대한 보건관리사업 기획, 수행, 및 사후평가

제 10장. 개인에 대한 건강진단 및 건강위해도 평가 시기

- ① 특정질병의 조기진단 및 추구관리
- ② 특정질병의 발병위험요인 및 위험도 평가
- ③ 특정질병에 대한 예방의술 제공
 - immunization or chemoprophylaxis
 - risk reduction or intervention
 - counselling
- ④ 제공된 예방의술의 사후평가

4. 수련교육의 년차별 과정

4-1. 기본 골격

- ① 현재 3년 수련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다.
- ② 학문수련은 기본적으로 처음 2년 동안에 성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의술수련은 2년차 후반기부터 학문수련과 병행하며 주로 observation 형태로 한다
- ④ 3년차는 주로 의술수련과정으로 한다.
- ⑤ 4년차는 세부전공에 대한 집중적 의술수련과 연구수련과정으로 한다.

4-2. 년차별 수련과정의 모식도

					전문의 시험 ↓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fellowship)
학문 수련					
의술 수련					
세부전공수련					

* 세부전공 분야는 전문의를 취득하고 주로 종사하게 되는 분야로서 현재와 같이 역학, 환경, 그리고 관리로 분류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보건행정 및 사업 임상예방의학, 그리고 교육연구 분야로 바꾸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음.

5. 부수적인 제규정의 개정

5-1. 수련기관 지정기준 :

<현행> ;

전속전문의 수: 2인 이상

시설 및 기구 : ① 예방의학실습을 위한 시설, 장비

-환경측정, 평가장비

-보건정보 분석, 처리장비

-지역사회 보건관리 실습장

② 의학도서실

<개정안> ;

전속전문의 수: 2인 이상(단 그 중 1인은 경력 5년 이상)

시설 및 기구 : ① 예방의학 학문수련 및 연구를 위한 시설, 장비

② 예방의술수련을 위한 시설, 장비

- 건강진단센터

- 보건관리사업대상의 인구집단

5-2. 다른 전문과목 수련 인정기준

<현행> ;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결핵과, 정신과 및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자
의학석사(예방의학전공) 및 보건학석사 소지자는 실무경험 1년 인정

<개정안> ;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산업의학과 전문의
유자격자는 4년의 수련기간중 1년을 면제함.
(결핵과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 및 의학석사, 보건학석사는 제외)

5-3. 전공의 정원

<현행> ; 지도전문의 수(N)만큼

<개정안> ; 지도전문의 수에서 1을 뺀 수(N-1)만큼

6. 개정안 채택시행을 위한 선행조건

6-1. 진료과목에 '예방의학과' 포함

;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에 규정하고 있는 진료과목의 종류에 '예방의학과'
가 포함되도록 하여 예방의학 전문의가 예방의술로서 개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6-2. 세부학습목표(SBO)의 결정

; 개정안(학습내용)에 대한 세부적 학습목표를 작성한다. 아울러 수련기관의
시설 및 실적기준 등을 마련한다.

6-3. 지도전문의 자격정비

; 산업의학수련기관과 예방의학수련기관이 실제로 중복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현재의 지도전문의중에는 예방의학과 산업의학중 택일을 하여야 할 형편에 있음. 예방의학의 지도전문의에 대한 자격기준 및 경력관리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함.

6-4. 지도전문의에 대한 ‘건강진단 임상예방의술’ 연수 특별프로그램 운영

; 건강진단을 통한 임상예방의술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일부 여건이 가능한 수련기관을 중심으로 학회차원의 지도전문의 연수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도전문의의 연수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전공의에 대한 수련교육 개정안을 시행한다.

참고문헌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Guide to Clinical Preventive Services, 2nd edition, IMP, 1996, Alexandria.

안 윤옥. 예방의학전공의 수련교육방향, 제46차 대한예방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연세집, 예방의학심포지움, 323-31, 1994년 10월

안 윤옥. 예방의학 전공의 수련교육과정, 제48차 대한예방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연세집, 학회보고 87-94, 1996.

대통령령 제12611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 1989

보건사회부령 제838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990

안 윤옥, 신 명희. 임상역학자의 활동과 역할, 한국역학회지, 제 16권 :20-27, 1994

신 영수. 전환기 한국의학과 예방의학의 역할, 제45차 대한예방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3-12, 1993.

대한예방의학회. 예방의학과 레지던트 수련교육과정, 단행본, 1992